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요강(案)

(목적) <이하를 법률의 목적으로 하여 명문화하여 정한다.>

(1) 1945년 9월 2일까지의 과거 일본 및 조선반도 및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행위에 의해 이들 지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 행위에 의해 이들 지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한 점에 대해 가해자로서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깊이 진사 사죄한다는 점을 명기한다.

(2) 上記(1)에서 말하는 우리 나라의 행위에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 등 국제법 및 국제정의에 위반된 범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이 국제법에는 당시의 확립된 국제법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예를 들면 1930년, 강제노동조약, 1910년 매춘을 시키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등) 및 그 준수를 서약한 국제법규가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나라와 국제사회가 모두 현재에 이르러서도 처벌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포츠담선언수락에 즈음하여 연합국의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일체의 전쟁범죄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수락하고,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및 일본 국내 및 국외의 다른 연합국 전쟁범죄법정의 재판을 수락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위의 많은 범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 가운데 어떤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처벌의무 규정을 갖는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처벌의무를 갖고 있으며, 필요한 소급적 처벌입법을 위한 의무 및 수사, 소추, 재판, 처벌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또 이러한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러한 소급적 입법에 의한 처벌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5조 등으로 확립된 국제법규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과를 감안하여 앞에 기록한 반성 사죄를 명확하게 표하고 또한 장래 같은 행위를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가해자인 우리나라가 과거는 물론 장래를 위해서도 스스로 필요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이상을 목적으로 명기한다.

(처벌대상범죄)

(1) <시기>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1945년 1월 1일 이후에 저질러진 작위, 부작위로 한다.

(2) <영역> 처벌대상범죄는 1945년 9월 2일까지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는 구 대일본제국영역 및 상시기간에 동 제국군이 점령한 지역에서의 작위, 부작위로 하고, 동일 이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질러진 때의 일본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및 일본에 의해 파견된 군사적 부대 또는 요원이 행동하는 지역에서의 작위, 부작위로 한다.

(3) <범죄의 종류> 처벌대상 범죄의 종류는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및 이에 준하는 범죄(강제노동죄, 매춘을 위한 부녀매매죄 외,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추가해야 할 것)의 세 종류로 하고 상기와 같은 때에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한 작위, 부작위이며 또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일반원칙에 의해 범죄라고 여겨졌던 작위, 부작위로 한다.

(4) <대상범죄자의 국적> 대상범죄자의 국적은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대상범죄의 정의)

- (1) '전쟁범죄'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준거한다.
 (2)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준거한다.
 (3) '강제노동죄' (강제노동을 강요한 자, 단 강제노동조약에 의해 허락된 범위 내의 행위임이 입증된 경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규정을 둔다), '매춘을 위한 부녀매매죄' (매춘목적으로 미성년 여성을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또는 폭행, 협박, 권력남용, 기타 일체의 강제수단을 취해 성년의 부녀자를 권유하거나 유인하거나 또는 납치한 자)를 제정하는 외에 (1), (2)에 준하는 국제범죄에 대해 전기한대로의 기준에 의해 국회가 정하는 바를 추가하는 것은 적당하다.
 (4) 공범처벌규정을 둔다.

강제노동 - 자살에 대한
 제정

(형벌)

- (1)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사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제인권<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본 정부에 대한 1993년 11월 5일의 권고를 충분히 존중하고 기타 범죄에 대한 사형과 함께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폐지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기타 죄에 대해서는 (1)에 준하여 국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사, 재판 수속법)

- (1) 원칙으로서 형사소송법을 따른다.
 (2) 본 입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률에 특칙을 두는 것 및 법률에 의해 최고 재판소에 특별규칙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시효부적용)

- (1) 국제관습법에 따라 본 법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소추에 관한 시효.
 (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관한 시효부적용 조약을 사전에 체결,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상 시효의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체결,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항변 사유 등) <이하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둔다>

- (1) 작위, 부작위가 국내법상의 적법행위였다는 것은 항변이 되지 않는다.
 (2) 상관의 명령에 의한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것을 정당화 하는 항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
 (3)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항변사유는 인정한다.
 (4) 자수에 대해서는 감형사유로 인정한다.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시기 이전에 자수한 자 및 관련된 민사재판에 있어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자 등 회오반성의념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도 청취한 다음에 이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회의 답신을 토대로 내각이 형의 집행 면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도를 법률로 정한다.